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52348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redacted]군

피 고 [redacte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13. 8. 30.[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3. 9. 2. 접수 제2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3. 9.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30.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85,654,300원의 지방세 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순번	세목	법정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체납금액(원)
1	취득세	2013. 8. 31.	63,088,730	18,547,750	81,636,480
2	재산세	2013. 9. 30.	1,680,000	418,730	2,098,730
3	재산세	2014. 9. 30.	1,707,410	211,680	1,919,090
합계			66,476,140	19,178,160	**85,654,300**

나. A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redacted]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092,000,000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자를 B(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000,000원), C(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000,000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2.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D의 신청으로 2013.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4. 7. 1. 체납처분으로 A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는 한편 A의 자택을 방문하여 A으로부터 D이 제기한 사해행위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렵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5. 7. 16.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4. 7. 1. 체납처분으로써 A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는 한편 A의 자택을 방문하여 A으로부터 사해행위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2013. 10. 2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뿐만 아니라 2014. 8.경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redacted]군 E 토지 등 수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그 밖에도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7. 1. 즈음이나 이 사건 소 제기 시점(2015. 7. 16.)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설령 원고가 2014. 7. 1.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임에도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무자력을 야기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채납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A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자금 확보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와 1순위 우선수익자인 [redacted]새마을금고가 모두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3, 4, 6, 7, 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503,074,000원 상당의 토지([redacted]군 E 대 630㎡ 및 F 대 326㎡), 시가 2,787,000,000원 상당의 미분양 빌라([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redacted]군 G, H 지상 공동주택 중 101동 18세대, 202호인 이 사건 부동산 포함,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060,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위 E 및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redacted]은행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 319,164,800원, B 등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 130,000,000원이 있었으며, 이에 원고에 대한 지방세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A이 이 사건 신탁계약과 동시에 [redacted]새마을금고로부터 1,800,000,000원의 채무를 추가 부담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실제 위 대출금 중 상당금액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건 빌라는 원고의 세 차례 강제경매개시신청이 모두 취하되었고 그 외 등기부상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redacted]새마을금고가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빌라는 감정평가액(2,787,000,000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060,000,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 [redacted]새마을금고 내부의 대출심의의결서 등에도 A의 원고에 대한 체납 조세채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redacted]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군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배정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 [redacted]군 G, H 제101동

철근콘리트구조 평지붕(철근 콘크리트구조) 5층 공동주택

1층 28㎡

2층 243.89㎡

3층 240.47㎡

4층 235.341㎡

5층 224.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6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redacted] [redacted]군 G 답 888㎡

2. [redacted] [redacted]군 H 답 30㎡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918분의 38.5033. 끝.